

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0

다. 상 정· 의 결 일 자 : 1999. 7. 22

총무위원회 상정· 의결

2. 개정이유

0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주민세의 세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0 주민세(개인균등할) 세율을 1,000원에서 3,000원으로 인상함.

(안 제2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0 지방세법 제176조 및 경상남도 표준 개정안 근거에 의거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,000원에서 3,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

0 군내 20세 이상 남녀 3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0%이상이 2,000 ~ 3,000원을 희망하였으며, 도내 군단위에서도 공히 3,000원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인상안은 적정 수준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0 문 : 균등할 주민세를 3,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군민부담에 과중한 것은 아닌지

● 답 : 군내 설문조사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였으며,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7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